

# 구제역 피해자 평창군 군세 감면안

의안 번호	4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1년 3월 일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창군 군세를 감면하고자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군내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소, 돼지 등의 살처분으로 축산물 피해를 입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(전·답·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), 농가주택, 농업용 건축물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2항의 시설을 말한다)에 대하여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구제역 피해자 평창군 군세 감면안 : 붙임

나. 관계법령 : 붙임

다. 피해자현황 : '01.02.21.현재 20농가(법인 2 포함)

# 구제역 피해자 평창군 군세 감면안

평창군수가 제출한 구제역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평창군 군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1. 감면대상 : 2010년 12월부터 평창군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피해자(소, 돼지 등의 살처분 피해 사실이 확인 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
2. 감면내역 :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(전·답·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), 농가주택, 농업용 건축물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2항의 시설을 말한다)에 대하여는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[ 지방세특례제한법 ]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)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(養蠶) 또는 머슴재배용 건축물, 축사, 고정식 온실,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, 창고[저온창고, 상온창고(常溫倉庫)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]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## [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]

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"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화(戰禍), 도괴(倒壞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
⑥ 시장·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.